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**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개정 안내**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-62호(2014.4.28.)

2.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·3항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,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46호, 2014.3.27.)」 이 불임과 같이 개정 · 고시 되어 안내합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

가. 신설 1항목

[439] Aflibercept 주사제(품명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)

나. 변경 3항목

[214] Sildenafil 경구제(품명: 파텐션정 20밀리그램)

[219] Tolvaptan 경구제 (품명: 삼스카정 15밀리그램, 30밀리그램)

[241] Somatropin 주사제(성장호르몬제) (품명 : 유트로핀주 등)

※ 시행일 : 2014년 5월 1일

붙 임 : 1. 고시문

2. 변경대비표

3. 별지1, 2(신설/변경)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/협회업무/보험국 공지사항)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한병원협회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대리 유소영 차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212 (2014.04.28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4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sy@kha.or.kr